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 형 재 의원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역 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